

법학과 및 법학전공 학생회칙

[2024.03.27. 개정]

법학과 및 법학전공 학생회칙

법학과 및 법학전공 학생회 회칙
[2024.03.27. 개정]

1998.11.06. 작성
2014.01.20. 개정
2024.03.27.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법학전공 학생회”(이하 ‘본 회’로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해서 활동한다.

- 자유롭고 체계적인 학풍의 조성
- 학우 상호 간의 친목 도모
- 미래지향적인 법학도의 위상 정립

제3조(구성)

본 회 구성원 각호로 한다.

- 한경국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부 법학과의 학적을 보유한 자
- 한경국립대학교 법경영학부 법학전공의 학적을 보유한 자
- 전공이 정해지지 않은 한경국립대학교 법경영학부생 가운데 법학전공 학생회 집행부의 일원인 자
- 전공이 정해지지 않은 한경국립대학교 법경영학부생 가운데 본 회가 주최한 전공 수요조사에서 법학전공을 선택한 자

제4조(회원자격의 취득과 상실, 정지)

- ① 본 회의 회원은 입학과 동시에 회원이 되며, 졸업과 동시에 자격을 상실한다.
- ② 휴학생은 휴학기간 동안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 ②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활동과 관련한 제반 의사결정에 투표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회원은 본회의 각종 회의 및 문서 책자를 통하여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 ④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 ⑤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⑥ 회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 ⑦ 휴학생은 다음 각호에 명시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한다.
 -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 2. 각종 투표권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한 참가권

제 2 장 총 회

제6조(지위 및 구성)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제7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법학전공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제8조(권한)

총회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 1. 본 회의 중대사항 심의·의결
- 2. 회칙 개정의 의결
- 3. 학생회장·부학생회장의 탄핵 의결권
- 4.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사항의 심의·의결
- 5. 기타 회장 또는 회원의 1/5 이상이 부의한 사항의 심의·결정

제9조(소집)

- ① 총회는 회장 또는 회원의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 ② 의장은 총회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개회 및 의결)

총회는 총원의 1/3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총원에서 위탁교육생, 휴학생은 제외한다.

제10조의 1 (총회 출석의 대리)

회원은 총회의 의사 결정권을 명시적인 방법으로 위임하여 대리인에게 출석하여 의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이때 대리인은 회원이어야 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1조 (지위 및 명칭)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운영 기구이다.

제12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법학전공 학생회장과 법학전공 부학생회장, 본 회에서 인정하는 학회 대표로 구성한다.

제13조 (의장)

법학전공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제14조 (업무 및 권한)

①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각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본회의 활동의 방향성에 대한 심의·의결권
2. 회칙 개정의 발의권
3. 사업계획 및 사업 보고의 심의·승인권
4. 총회 소집 요구
5. 집행부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내부 징계 수위를 양정
6. 기타 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사항의 결정

②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총회의 요청에 의해 학생회의 전체 예산 및 결산을 심의·조정하여 총회에 제출
2.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 4 장 학생회장.부학생회장

제15조(회장단의 지위)

- ① 학생회장은 학생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학생회장은 총회와 운영위원회, 학생회 집행부의 의장이 된다.
- ③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학생회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 ④ 회장단이 모두 유고 시에는 집행부 가운데 1인을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임기)

- ①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종료부터 2학기 종강일로 한다.
- ② 차기 학생회장단 선거에서 당선된 차기 회장단은 후임자로서 전임자의 임기 종료까지 당선인으로 취급한다.

제17조(선출)

- ①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각각 1인으로 하며 하나의 회장단을 구성한다.
- ② 법학전공 회원 및 법학전공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18조(업무 및 권한)

- ① 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한다.
- ② 집행부의 장이 되며, 집행부의 구성 및 구성원의 임명 또는 해임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 ③ 학생회비의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법학전공 총회에 제출한다.
- ④ 법학과 및 법학전공의 학내 모든 활동 및 행사를 주관한다.

제19조 (회장단 궐위 시)

- ① 학생회장 궐위 시 부학생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 ② 부학생회장 궐위 시 운영위원회에서 그 권한 대행을 선출한다.
- ③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모두 궐위 시 집행부 가운데 1인을 선출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대리인 순서는 아래 각호로 한다.
 1. 학생회 집행부 가운데 최고학번 1인
 2. 학생회 집행부 총무
 3. 학생회 집행부 관리부장

제 5 장 집 행 부

제20조(지위)

집행부는 본 회의 집행 기구이다.

제21조(구성)

- ① 총무, 각 부장 및 그 부원으로 구성한다.
- ② 집행부 위원은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협의로 임명한다.
- ③ 감사부, 관리부, 홍보부, 체육부를 기본 부서로 규정한다. 다만 회장단의 결정에 따라 합병, 축소할 수 있다.
 1. 감사부 : 본 학회의 사무 회계 및 예·결산 보고서 작성을 한다.
 2. 관리부 : 학회 물자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3. 홍보부 : 학회 활동의 홍보와 문서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4. 체육부 : 학회 체육활동과 문화 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④ 본 회의 회장단은 기본 부서 외에 신규부서를 신설 할 수 있다.

제22조(업무 및 권한)

- ① 집행부는 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과 본 회의 목적을 위한 제반 업무를 집행한다.
- ②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집행한다.
- ③ 본 회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회장단이 지시한 업무를 집행한다.

제 6 장 재 정

제23조(학생회비)

- ① 본 회의 재정은 회비와 보조금 및 기부금 수입으로 한다. (이하 '회비'라 칭한다.)
- ②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학생회비, 학교 보조금, 기타 보조금으로 하며, 본 회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회비의 액수는 매 학기 말 총학생회와 대의원회가 지정한 한도를 바탕으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단, 회비의 액수의 변동이 없는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학년별 회비의 차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1학년 100%
 2. 2학년 75%
 3. 3학년 50%
 4. 4학년 25%

제24조(예산)

- ① 회비는 운영위원회가 정한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한다. 단, 예외는 있을 수 있다.
- ② 납부 기간 외 납부는 해당 학년도의 납부자의 학년을 기준으로 액수를 책정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교내 행사를 집행함에 있어 추가적인 보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예산집행)

- ① 예산집행 시에는 일체 경비에 대하여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총무는 회계장부를 비치하며 경비 일체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회계장부 정리 방법은 대의원회의 규정에 따라 기재한다.

제26조(회계감사)

- ① 대의원회의가 주최하는 자치 기구 정기감사는 대의원회 회칙에 따라 엄중히 임한다.
- ② 총회의 명령으로 임시 회계감사를 열 수 있다.

제27조(결산보고)

- ① 결산보고는 대의원회 주최의 자치 기구 2학기 정기감사 이전 완료한다.
- ② 결산보고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 ③ 학생회장 및 총무는 결산안이 승인되면 1주일 내에 결산보고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④ 다만, 대의원회 회칙에 정해진 바 있다면 그를 따른다.

제28조(회비의 환불)

- ① 운영위원회가 공지한 회비 납부 기간 내 환불은 납부한 전액 환불한다.
- ② 동조 1항 이외의 납부 기간 외 환불은 불가하다.
- ③ 단, 자퇴, 전과로 인한 학적 변동은 예외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 이후 회비의 환불이 가능하다.
- ④ 기간 외 회비의 환불액은 아래 각호를 참조하여 학적 변동이 있는 시점의 잔액으로 한다.
 1. 1학년 75%
 2. 2학년 50%
 3. 3학년 25%
 4. 4학년 잔액 없음

제 7 장 회장단 선출

제29조(선거권)

선거권은 모든 회원에게 등가로 주어진다.

제30조(피선거권)

- ① 회장 및 부회장의 피선거권은 모든 회원에게 주어진다.
- ② 회장과 부회장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한경국립대학교 인문사회대학 법학과 학적을 가진 자 및 한경국립대학교 법경영학부 법학전공 학적을 가진 자
2. 한경국립대학교 학칙에 의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제31조(회장단 선출)

- ①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 ② 단일 후보일 경우 당선자는 회원 30%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의 찬성으로 한다.
- ③ 후보가 2인 이상일 경우에 당선자는 후보자 중 다수 득표자로 한다.
- ④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 8 장 회칙 개정

제32조(발의)

회칙 변경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의장 또는 회원의 1/5 이상 요구로 한다.

제33조(의결)

발의 시 학생회장은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하고, 재적인원 1/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공고)

- ① 개정 의결된 학생회칙은 총회 의장이 즉시 공고한다.
- ② 개정 의결된 학생회칙은 공고한 즉시 효력을 가진다.
- ③ 공고의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 (시행)

본 회칙은 공포 즉시 발효한다. 단 회칙의 개정 내용에 따른 발효 시한에 대한 특별 부칙을 둘 수 있다.

제2조 (회칙 외 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민주주의 원칙 및 관례에 따른다.

집행부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에 관한 세칙

2024.03.27. 작성

2024.03.27 작성

제1조 (집행부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집행부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징계 양정은 아래 각 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조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 징계양정 회부 대상자)

집행부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 징계양정 회부 대상자는 아래 각호로 한다.

1. 형사상 재판에 피의자로서 있는 자
2. 한경국립대학교 교내 징계를 받은 자
3. 집행부 활동 간 본연의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서 물의를 일으킨 자
4. 기타 운영위원회에 건의된 자

제3조 (벌칙)

- ① 본 규칙의 벌칙은 아래 각호로 한다.
 1. 6월 이하 기한부 활동 정지
 2. 면직
 3. 파면
- ② 활동 정지의 징계를 받은 자는 집행부의 신분을 유지한다. 다만, 집행부의 권한과 본 회를 향한 권리는 기한부로 박탈한다.
- ③ 면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외한 본회를 향한 모든 권리를 장래에 계속하여 박탈한다.
- ④ 파면의 징계를 받은 자는 불명예 퇴출로서 선거권을 제외한 본회를 향한 모든 권한과 권리를 장래에 계속하여 박탈한다.
- ⑤ 본 회를 향한 권리는 총회 의결권, 총회 발의권, 본 회 주최의 행사 참여, 본 회 주최의 학생복지사업 참여로 정의한다.
- ⑥ 집행부의 권한은 회장이 부여한 집행부로서 물자와 자료에 관한 접근권한, 집행부의 업무에 관한 의견발의권으로 정의한다.

선거관리 세칙

2024.03.27. 작성

2024.03.27 작성

제1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 학생회장단의 선거관리를 총괄한다.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선거관리위원장 1인과 복수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 학생회장단의 임기 종료 이전 대의원회가 지정한 일자에 구성한다.

제3조 (선거관리 위원장)

- 선거관리위원장은 임기 중인 학생회장으로 한다. 단, 임기 중인 학생회장이 차기 학생회장단 투표의 후보일 때는 부학생회장으로 한다.
- 임기 중인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모두 차기 학생회장단 선거의 후보일 때, 임기 중인 학생회 집행부 일원 중 1인을 지정한다.

제4조 (선거관리 위원)

선거관리위원은 차기 학생회장단 후보와 차기 학생회 집행부 후보를 제외한 임기 중인 학생회 집행부로 한다.

제5조 (입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

- 대의원회가 지정한 선거 종료 일자 14일 이전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 입후보자 공고 이후 3일간 입후보자 등록을 한다.
- 입후보자 공고는 온라인,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다.

제6조 (입후보자 등록/신청)

입후보자 등록/신청은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명시적인 의사

표현으로 한다.

제7조 (투표와 개표)

- 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회원의 선거권을 보장하기에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여 선거를 진행한다.
- ② 투표는 일반 민주주의 원칙을 따른다.
- ③ 투표종료일을 포함한 3일을 투표기일로 한다.
- ④ 개표는 투표가 종료된 직후 한다. 개표 직후 결과를 공고한다.
- ⑤ 개표 직후 결과를 공고한다.

제8조 (당선)

- ① 당선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한다. 이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가리지 않는다.
- ② 당선인은 임기 중인 학생회장단의 임기 종료까지 당선인의 신분을 유지한다.

제9조 (인수인계)

임기 중인 학생회는 당선인을 위해 인수인계에 성실히 임한다. 선거 결과 공고 이후 당선인의 임기 시작까지의 기간을 인수인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기)

- ① 임기 중인 회장단의 임기가 끝나기까지 당선인은 당선인의 신분을 유지한다.
- ② 임기 중인 회장단의 임기가 끝난 때 당선인의 임기를 시작한다.

제11조 (비대면 수업 시 선거 방법)

비대면 수업 시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회원의 선거권을 보장하기에 적합한 방법을 선정하여 선거를 진행한다.

제12조 (유효표 미달)

유효표의 미달로 인해 당선인이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투표기일을 5일 1회 연장한다.

제13조 (비상대책위원회)

차기 학생회장단 당선인이 없을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로서 학생회장단의 업무를 대리한다.

부록

법학전공 학생회 지정 양식

출석 및 의결권 위임장

위임인은 법학전공 학생회 정회원으로서

_____년 _____월 _____일(_____)

_____에서 개최되는

_____에 출석할 수 없으므로

출석 및 의결권을 _____에게 위임합니다.

상기 밑줄에는 총회 참석 예정인 정회원에 해당하는 피위임인을 기재함.

* 예시 : (1) 피위임인 ○○○

(2) 총회 의장 / 부의장

(3) 법학전공 학생회 집행부 ○○○

■ 참고 사항 :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본 위임장을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반드시 원본을 총회 의장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구분	성명	학번	입학유형
-	(예시)홍길동	2023510XXX	신입학 / 편입학
위임인			신입학 / 편입학
피위임인			신입학 / 편입학

위임인 : _____ (인)

피위임인 : _____ (인)

제 _____회 법학전공 _____의장 귀하

회칙 개정 기록

회칙 개정 기록

1998.11.06. 작성
2014.01.20. 개정
2024.03.27. 개정

● 1998.11.06. 회칙 작성

기록말소

● 2014.01.20. 개정

기록말소

● 2024.03.27. 전면 개정

제1회 임시총회

주최 - 제28대 법학전공 학생회
일시 - 2024년 03월 27일
장소 - 한경국립대학교 학생회관 학생극장
의장 - 28대 학생회장 김동혁
서기 - 28대 학생회 서기 이나희

개정 사항

1. [제1조(명칭)] 부분 개정
2. [제2조(목적)] 부분 개정
3. [제3조(구성)] 전부 개정
4. [제4조(회원자격의 취득 상실과 정지)] 부분 개정
5.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일부개정, 항목 신설
6. [제7조(의장)] 부분 개정
7. [제8조(권한)] 전부 개정
8. [제9조(소집)] 전부 개정

9. [제10조(총회의 의결 방법)] 삭제 후 재작성, 개정 회칙 [제10조(개회 및 의결)] [제10조의 1(총회 출석의 대리)]
10. [제11조(지위)] 명칭 및 부분 개정 [제11조(지위 및 명칭)]
11. [제12조(구성)] 부분 개정
12. [제13조(의장)] 부분 개정
13. [제14조(업무 및 권한)] 전부 개정
14. [제15조(회장단의 지위)] 전부 개정
15. [제16조(임기)] 전부 개정
16. [제17조(선출)] 전부 개정
17. [제18조(업무 및 권한)] 부분 개정
18. [제19조(회장단 궐위 시)] 전부 개정
19. [제20조(지위)] 전부 개정
20. [제21조(구성)] 전부 개정
21. [제22조(업무 및 권한)] 전부 개정
22. [제23조(학생회비)] 전부 개정
23. [제24조(예산)] 전부 개정
24. [제25조(예산집행)] 항목 신설
25. [제26조(회계감사)] 조항 신설
26. [제27조(결산보고)] 전부 개정
27. [구회칙 제27조(지원금)] 삭제
28. [제28조(회비의 환불)] 조항 신설
29. [제30조(피선거권)] 부분 개정
30. [제31조(회장단 선출)] 부분 개정, 항목 신설
31. [구회칙 제31조(비대면 수업시 선출방법)] 삭제
32. [제32조(발의)] 부분 개정
33. [제34조(공고)] 조항 신설
34. [제32조(부칙)] 삭제
35. [부칙] 작성
36. [집행부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에 관한 세칙] 작성
37. [선거관리 세칙] 작성